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5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82	한지아의원 등 10인	'24. 7. 26.	'24. 11. 14.
	3167	김미애의원 등 10인	'24. 8. 23.	'24. 11. 14.
	3788	김미애의원 등 11인	'24. 9. 9.	'24. 11. 14.
	4124	최보운의원 등 10인	'24. 9. 20.	'24. 11. 14.
	4243	서명옥의원 등 10인	'24. 9. 24.	'24. 11. 14.

나.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2024. 12. 3.)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4. 12. 5.)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4. 12. 5.)

비용추계 생략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 학생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영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등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 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

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2).

나.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원칙의 예외로, 기존 아동학대행위자 외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아동학대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중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5조제5항 단서 및 각 호).

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아동의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청구를 「민법」 규정에 따라 친권 상실 또는 친권 일시정지의 신고 청구, 친권 일부 제한의 신고 청구,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신고 청구로 규정하면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

라.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사유에 「민법」 규정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아(棄兒)

를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된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되도록 함(안 제19조).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담·조사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고, 수행 업무에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을 추가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바. 보호대상아동 가정복귀의 예외 사유에 복귀 가정 거주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상담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 수립·시행 시 그 대상으로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대상에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에도 아동학대행위자와 함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제22조제3항제2호,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4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46조제2항제3호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5 등).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례

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제1항).

아.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입력·관리하도록 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

차.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주체가 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 등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점검·확인 권한 등을 부여함(안 제2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카.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29조의9 신설).

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법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하거나 형사사법정보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10 및 제29조의11 신설).

과. 유족 등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사람,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 및 면담에 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71조 및 제75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단서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대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으로,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각각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각각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3. 「민법」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된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

1.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2.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견 및 보호”를 “발견, 보호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

례판단위원회를 두며, 아동학대사례판단 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를 한”을 “조사 및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를 우선 실시하고 사후에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2항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입력·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로, “아동학대행위자는”을 “아동학대행위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는”을 “아동학대행위자등은”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원,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
 3.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4.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립 인·허가 또는 신고를 관할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

- 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6.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
 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
 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3.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
 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7.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8.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서비스제공기관
 19.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입양기관
 20.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21.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산후조리원
-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 교습소

5. 제29조의3제1항제28호의 대안교육기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 계획, 추진 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9(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10(아동학대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담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소속된 직원
3.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직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및 수사기관의 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3호의 형사사법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서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원의 장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대상자”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1의3. 제29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제75조제3항제1호의5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75조제4항 중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u>“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u>
9. ~ 11. (생략)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u>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	9. ~ 11. (현행과 같음)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 ----- ----- -----

레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
항으로 본다.

1.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생
략)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
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
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
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
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
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
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
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
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
대행위자”라 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신 설>

⑥ ~ ⑪ (생략)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
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가정법원
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

③ -----

-----제1항
각 호에 따른-----

-----.

④ -----

-----제1항 각 호에 따른-----

-----.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
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
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
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야 한다.

⑤ -----

-----가정법원
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
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
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
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
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
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된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
1.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2. 「민법」 제924조, 제924조
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삭 제>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정법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
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
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생 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
담·조사

<신 설>

3. (생 략)

④·⑤ (생 략)

<신 설>

-----.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발견,
보호 및 지원-----
-----.

1. (현행과 같음)

2.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정
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
단”이라 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그 소속으로 아

⑥ · ⑦ (생략)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두며, 아동학대사례판단 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 ----- ----- ----- ----- <u>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u>----- ----- ----- ----- ----- ----- -----.
--	---

1. ~ 5. (생략)

② (생략)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

-----조사 및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한-----

-----.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를 우선 실시하고 사후에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
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
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
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
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
다. <후단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
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

⑤·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
상자-----

----. 이 경우 입력·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피해아동의 가
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
대사례관리대상자-----
-----.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④·⑤ (생략)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

1. ~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
아동학대행위자등은-----

-----.

② -----

아동학대행위자등은-----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7. (생략)

<신 설>

② ~ ⑦ (생략)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 제7호·제8호·제18호·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제9호·제10호·제11호·제23호·제25호·제26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

기관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원,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
3.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

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제20호·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신 설>

<신 설>

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항제16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4.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립 인·허가 또는 신고를 관할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

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
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
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
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
동복지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
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3.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
가정지원센터

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
화가족지원센터

5.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
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6.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
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

7.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
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
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
기관
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
애인복지시설
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
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
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
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
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3.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
소년활동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은 제외한다)
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
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
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
년치료재활센터
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
육시설
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

<신 설>

부모가족복지시설

17.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8.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서비스제공기관

19.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입양기관

20.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21.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산후조리원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 교습소

5. 제29조의3제1항제28호의 대안교육기관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⑥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신 설>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 계획, 추진 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

제29조의9(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 업무를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10(아동학대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9조의 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담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와 그 밖의 관
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
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
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소속된 직원

3.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직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
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
3호의 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하
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

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및 수사기관의 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신 설>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제공받

은 형사사법정보를 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
부장관 및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
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제
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제
공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
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
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
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
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보장원의 장이 정
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u>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u> ⑦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u>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피해아동, <u>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u>	3. ----- <u>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 사례대상자</u>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 ----- ----- -----

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1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생략)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1의3. 제29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4. (생 략)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u>아동학대행위자</u> 2. ~ 4.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u>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 ----- ----- ----<u>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u> 2. ~ 4. (현행과 같음) ④ ----- ----- -----<u>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 -----
--	--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부과·징수한다.	-----.
--------------------------------	--------